

제 74 호

행정명령(EXECUTIVE ORDER)

**NASSAU 및 ROCKLAND 카운티 내의 특정 교육구에 교육구 세금 납부 기간 연장**

본인은 뉴욕주의 모든 62 개 카운티에 재난 비상을 선포하는 행정명령 제 47 호를 2012 년 10 월 26 일에 발령하였습니다.

2012 년 10 월 29 일부터 허리케인 Sandy 는 뉴욕주 전역에 강풍과 폭우를 퍼부었으며 기록적인 침수와 심각한 태풍을 일으켰습니다. 이로 인해서 Nassau 및 Rockland 카운티를 포함한 여러 카운티가 피해를 입었습니다.

Nassau 카운티에 위치한 학교들의 2012-2013 년 학년도 교육구세 납부 마감일이 원래 2012 년 11 월 10 일경이었습니다.

Rockland 카운티에 위치한 Haverstraw-Stony Point Central 교육구의 경우 2012-2013 년 학년도 교육구세 1 회차분 납부 마감일이 원래 2012 년 11 월 5 일경이었습니다.

부동산세법 제 925-a 조는 주지사에게 주 재난 비상 동안 피해를 입은 카운티, 시, 타운, 빌리지 또는 교육구의 CEO 의 요청시 그러한 세금을 이자 또는 벌금 없이 납부하도록 기간을 현재 그러한 세금이 도래된 첫날로부터 최장 21 일까지 소급 연장할 권한을 부여합니다.

허리케인 Sandy 가 야기한 현재의 붕괴의 결과로 Nassau 및 Orange 카운티 내의 특정 교육구들이 각각 2012 년 10 월 31 일경과 2012 년 11 월 10 일경에 도래한 교육구세의 납부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였으며, 그러한 연장이 2012 년 11 월 9 일에 발령된 행정명령 제 70 호에 의해 부여되었습니다.

지사실은 하기 카운티 내의 다음 교육구들로부터도 그러한 연장 요청을 접수하였습니다: Nassau 카운티: (1) East Williston 연합 자유 교육구; (2) Roslyn 연합 자유 교육구; (3) Lawrence 연합 자유 교육구; (4) Franklin Square 연합 자유 교육구; (5) New Hyde Park-Garden City Park 연합 자유 교육구; (6) Malverne 연합 자유 교육구; (7) Floral Park-Bellerose 연합 자유 교육구; (8) Elmont 연합 자유 교육구; (9) Lynbrook 연합 자유 교육구; (10) North Shore 중앙 교육구; (11) Valley Stream 연합 자유 교육구 24; (12) Valley Stream 연합 자유 교육구 13; (13) Valley Stream 연합 자유 교육구 30; (14) Baldwin 연합 자유 교육구; (15) Garden City 연합 자유 교육구; (16) Rockville Centre

연합 자유 교육구; (17) Island Park 연합 자유 교육구; Rockland 카운티: (18) Haverstraw-Stony Point 중앙 교육구.

앞에서 언급된 계속된 어려움이 닥치고 있는 카운티 주민들에게는 그러한 연장이 분명히 타당합니다.

이제, 그러므로 본인 ANDREW M. CUOMO 뉴욕주 지사는 부동산세법 제 925-a 조에 의거 주지사에게 부여된 권한에 의거 Nassau 카운티에 소재한 상기 교육구를 대상으로 교육구세의 원래 납부 마감일인 2012년 11월 10일경부터 21일 동안 이자 또는 벌금을 부과하지 않고 납부 마감일을 연장합니다.

또한, 부동산세법 제 925-a 조에 의거 주지사에게 부여된 권한에 의거 소급해서 2012년 11월 5일경이 교육구세 납부 마감일인 Rockland 카운티에 소재한 상기 교육구의 교육구세 납부 마감일을 상기 마감일부터 21일간 연장합니다.

또한, 이 행정 명령은 허리케인 Sandy 에 의해 피해본 카운티 내 추가의 교육구들에게 교육구세 납부 기간을 연장해주기 위해 수정되거나 개정될 수 있습니다.

2012년 11월 13일 Albany 시에서 주 옥새 및

본인의 자필로 서명합니다.

주지사

주지사 비서